

# 구립어린이집(6개소)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

## 1. 제안이유

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구분	시설명	소재지	시설현황		위탁체 현황		원장	보육정원	비고
			연면적 (㎡)	층수	위탁체명	위탁기간			
재위탁	새롬 어린이집 (독산2동)	독산로58가길 88	987.83	지하1층, 지상 1~4층	대한예수교 성결교회 독일교회	'19.3.1.~'22.2.28. (3년)	최미영	90	구소유
	유셀 어린이집 (시흥2동)	금하로 750 관악우방A 단지내	110.16	지상1층	개인/ 고은순	'18.3.1.~'23.2.28. (5년)	고은순	31	관리동
재계약	별솔 어린이집 (독산1동)	한내로 62 4동 104호 (독산한신A)	89.46	지상1층	개인/ 김은미	'17.3.1.~'22.2.28. (5년)	김은미	20	구소유
	도로시 몬테소리 어린이집 (독산1동)	벚꽃로 73 108동 106호 (금천현대A)	59.82	지상1층	개인/ 양미자	'17.3.1.~'22.2.28. (5년)	양미자	17	국공립 전환
	남서울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(시흥1동)	시흥대로 165 남서울 힐스테이트A 커뮤니티센터	135	지상1층	사회복지법인 오병이어 복지재단	'17.3.1.~'22.2.28. (5년)	정혜영	31	관리동
	늘채움 어린이집 (시흥2동)	금하로 750 106동 102호 (관악우방A)	114.89	지상1층	개인/ 정지윤	'17.3.1.~'22.2.28. (5년)	정지윤	20	구소유

※ 유셀어린이집 : 현 위탁체의 위탁해지 신청으로 인한 재위탁(' 22.2.28.까지 운영)

## 나. 주요위탁 내용

### 1) 위탁업무

- ▶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
- ▶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  
(교육·영양·건강·안전·부모에 대한 서비스·지역사회와의 교류)
- ▶ 운영시스템(CCTV등), 어린이집 관련서류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행

### 2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보육정책위원회 심의

### 3) 위탁기간

시설명	위탁기간	비고
새롬, 유썬어린이집	2022. 3. 1. ~ 2027. 2. 28.(5년)	재위탁
별솔, 도로시몬테소리, 남서울힐스테이트, 늘채움어린이집	2022. 3. 1. ~ 2027. 2. 28.(5년)	재계약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1)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, 제14조, 제17조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)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
- 2) 구립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, 제14조, 제17조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## 관 련 규 정

###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

**제13조(위탁운영)**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결정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1.3.18, 2014.12.30.>

**제14조(위탁계약)**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, 평가 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.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개정 2014.12.30.>

④ 재수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,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,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[조항 전부개정 2011.3.18]

**제17조(위탁기간)**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20.12.31]

###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**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<개정 2016.7.18.>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<개정 2016.7.18.> [전문개정 2020.7.17]

**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
4. 민간위탁 기간

5. 수탁자 선정방식
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[본조신설 2020.7.17]